

법제처 심사 전

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2023. 11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 
(농 지 과)

## 1. 개정이유

가.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 구체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(법률 제19639호, 2023. 8. 16. 공포)됨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세대원이 아닌 자 외 처분이 가능한 자, 농지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시 조사원증 양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과제,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농지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

- 1) 농지처분의무 부과 당시 세대원이 아닌자 외 농지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(안 제8조제1항 개정)
- 2)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농지 출입 시 이를 증명하는 증표 마련(안 제63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65호 서식 신설)

나.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

- 1)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콩나물재배사가 설치 가능한 총부지 면적의 기준 명확화(안 제24조제4호 개정)
- 2)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(안 제5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8조의2서식 개정)
- 3) 타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조문정비(안 제7조제2항제1호가목, 제16조의2제2항, 제30조제2항제1호, 제38조제2항제4호, 제47조제4호, 제64조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 : 해당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     타 : 붙임(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
##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“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
1.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(「상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)을 말한다.)

2.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 
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4호 중 “총부지의 면적”을 “부지의 총면적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제1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2항제4호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로 한다.

제47조제4호 중 “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63조제3항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르며, 법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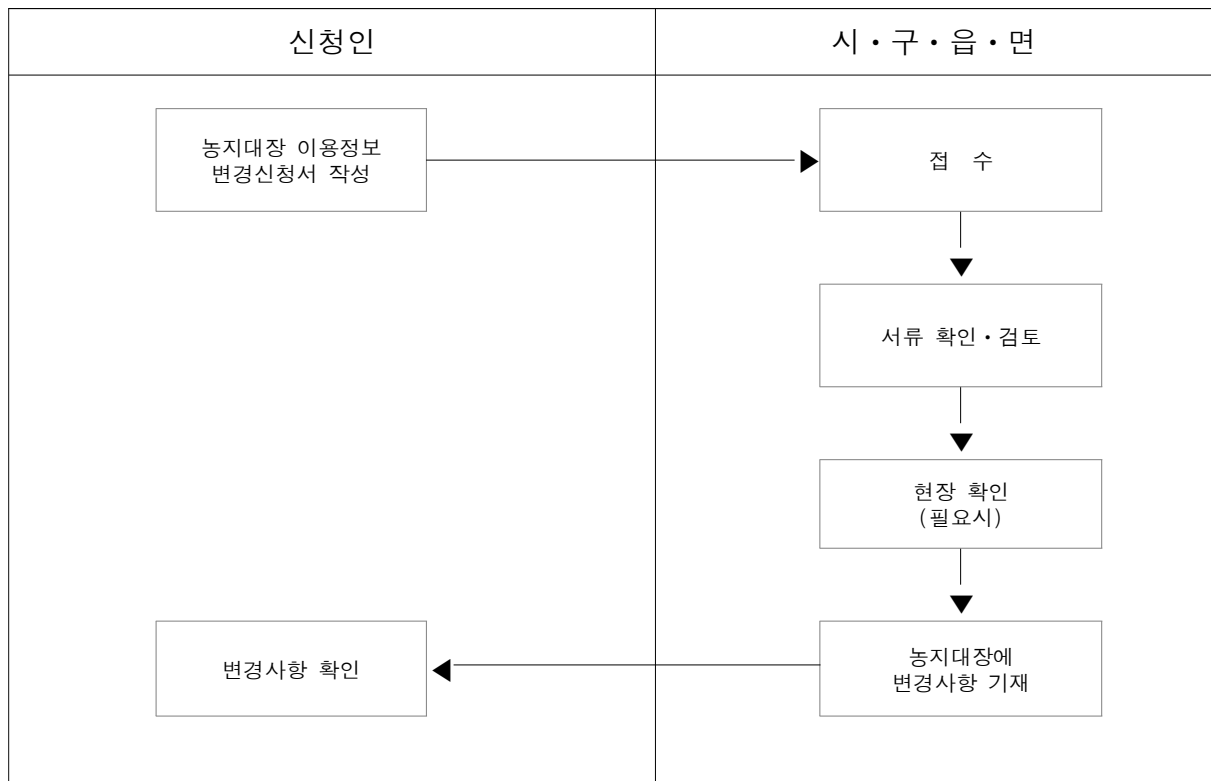
제64조 중 “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뒤쪽)

#### 업무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별지 제6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서식]

(앞쪽)

No:

**농지조사원증**

사 진

3cm×4cm

(신청 전 6개월 이내  
에 모자 등을 쓰지  
않고 뒤 그림 없이  
촬영한 상반신 정면  
사진)

성 명

소속기관명

(뒤쪽)

**농지조사원증**

소 속:

직위/직명:
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농지법」 제54조제6항 및 제  
54조의제6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임을 증  
명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기관 장  
직인

〈주 의 사 항〉

1. 조사원이 해당 조사·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 
에는 항상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 
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2.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  
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.
3.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  
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  
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)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(신청인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| 1. -----<br>-----<br>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3항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| 나. ~ 마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~ ⑥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)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)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“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① · ② (생략)

제16조의2(대리경작자 지정 신청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(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(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

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
1.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(「상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)

2.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

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
제16조의2(대리경작자 지정 신청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전  
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24조(농업·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·축산업용 시설의 범위)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

제30조(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)

① (생 략)

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, 시설물의 배치도, 소요자금 조달방안, 시설물관리·운영계획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 및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

2. ~ 5. (생 략)

③·④ (생 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농업·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·축산업용 시설의 범위)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부지의 총면적-----  
-----

제30조(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-----  
-----  
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·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

5. ~ 8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7조(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)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

제38조(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감정평가  
법인등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) -----  
-----

총면적 중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

5. ~ 8. (생략)

제57조의2(농지대장의 변경신청)

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1.·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3조(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) ①·②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  
-----  
-----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2(농지대장의 변경신청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3조(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) ①·② (현행과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<u>따른다</u>.</p> <p>제64조(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)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<u>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 | <p>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 <u>따르며</u>,<br/><u>법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증표</u><br/><u>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</u>.</p> <p>제64조(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) -<br/>-----<br/>----- 「<u>국고금</u><br/><u>관리법 시행규칙</u>」-----.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     | (044) 201 - 1735, 1736 |